

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

(오한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7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

발 의 자 : 오한아, 김창원, 김춘례 의원
(3명)

찬 성 자 : 박기재, 이영실, 안광석,
김소영, 최영주, 이병도,
송재혁, 문병훈 의원 (8명)

1. 제안이유

- 마을미디어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상 공유, 생활문제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, 참여민주주의 및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현재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시장이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,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함(안 제3조)
- 나.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다.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라.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의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- 마.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없음

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마을미디어”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, 음성, 인쇄 매체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,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.

1.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추진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

주요 사업계획

2.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
3.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
2.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, 실습, 제작 등의 활동
3.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1.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2.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
제6조(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시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미디어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
2.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
3. 시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
4.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
5. 그 밖에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우수콘텐츠의 활용) 시장은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 체제의 구축)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,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,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